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5.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천원)

안건번호	사업명	사 업 내 용	출연금액
계			3,629,309
101	영등포구장학재단 출연금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324,000
102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공연예술 진흥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3,288,600
10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제개편 등 연구	16,70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¹⁾의 개정(2016 회계 연도 시행)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것으로,
- 영등포장학재단 출연 등 3개 사업 (총 36억여 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참고로, “법” 개정취지는 출연금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 하려는데 있고,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 따라서, 출연금액은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101
----------	-----

제출년월일 : 2015.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대상 : (재)영등포구장학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다. 사업내용

- 우수 고등학생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

라. 출연 필요성

- 2015년도 4월 17일에 구가 기본재산 5억원을 출연하여 영등포구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장학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하던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 영등포구장학재단에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우수 학생의 유출 방지와 영등포구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마.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소요예산)

- 범 위 :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 출연금액 : 324,000천원

※ 2016년도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